

의안번호	2200733
의 퇴 인	송옥주의원
회 답 일	2024. 7. 24.
추계번호	24B117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남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총사업비(국비, 지방비, 자부담)는 검진율 시나리오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계됨

- (시나리오 1) 검진율 50.0%인 경우, 5년간 총 2,448억원 (연평균 490억원)
 - (국 비) 1,270억원 (연평균 254억원)
 - (지방비) 936억원 (연평균 187억원)
 - (자부담) 234억원 (연평균 47억원)
- (시나리오 2) 검진율 61.9%인 경우, 5년간 총 3,005억원 (연평균 601억원)
 - (국 비) 1,548억원 (연평균 310억원)
 - (지방비) 1,159억원 (연평균 232억원)
 - (자부담) 290억원 (연평균 58억원)
- (시나리오 3) 검진율 75.2%인 경우, 5년간 총 3,629억원 (연평균 726억원)
 - (국 비) 1,860억원 (연평균 372억원)
 - (지방비) 1,408억원 (연평균 282억원)
 - (자부담) 352억원 (연평균 70억원)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안 제14조제4·5항(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시나리오 1 (검진율 50.0%일 때)	총사업비	473	481	489	498	507	2,448	490
	- 국비(50%)	245	250	254	258	263	1,270	254
	- 지방비(40%)	180	184	187	191	194	936	187
	- 자부담(10%)	45	46	47	48	49	234	47
시나리오 2 (검진율 61.9%일 때)	총사업비	580	590	601	611	622	3,005	601
	- 국비(50%)	299	304	310	315	320	1,548	310
	- 지방비(40%)	223	227	232	236	240	1,159	232
	- 자부담(10%)	56	57	58	59	60	290	58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안 제14조제4·5항(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시나리오 3 (검진율 75.2%일 때)	총사업비	700	713	726	739	752	3,629	726
	－ 국비(50%)	359	366	372	378	385	1,860	372
	－ 지방비(40%)	271	276	282	287	292	1,408	282
	－ 자부담(10%)	68	69	70	72	73	352	70

주: 1. (시나리오 1) 검진율 50.0%인 경우 (정부안 준용. 현행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예산 참고)
 (시나리오 2) 검진율 61.9%인 경우 (과거 3년('17~'19년)간 남성농업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평균)
 (시나리오 3) 검진율 75.2%인 경우 (최근 3년('21~'23년)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평균)
 2. 검진비 단가에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수가인상률 평균값 2.02% 적용
 3. 국비, 지방비, 자부담 분담률은 50% : 40% : 10%로 가정 (현행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참고)
 단, 국비에 검진관리비(행정비용) 포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통계청 및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4조제4·5항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함.</u> 다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함(제4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농어업인의 질환 현황 조사, 건강검진의 시기·항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추계여부
1	안 제14조제4·5항(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	• 남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비용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남성농어업인의 특수건강검진 비용에 대해 추계함
 - 여성농어업인에 대해 현재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특수건강검진 사업 실시 중이므로 안 제14조제4항 단서¹⁾에 따라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남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의 범위, 검진수가, 검진주기 등은 현행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사례를 준용함

[표 2] 2024년도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지침 개요

소관부처	여성농업인 농림축산식품부	여성어업인 해양수산부
	51~70세 여성농업인	51세 이상 여성어업인
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 검진대상지로 선정된 시·군·구 거주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어업인,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검진 신청 시·군·구에 거주
검사주기	2년마다(격년제) (홀짝수년 출생자 대상)	
검진항목	• 농약중독감시(농약) • 근골격계질환(중량물, 작업환경) • 골절위험도(낙상) • 심혈관계질환(온열, 스트레스) • 폐질환(분진) • 예방교육 등	• 근골격계질환(신체부담작업, 중량물 취급) • 골절위험(낙상) • 심혈관계질환(온열, 스트레스) • 난청(소음) • 예방교육 등
건강검진 단가	• 51~70세: 220천원(54세 및 66세 제외) • 54세 및 66세: 175천원(골밀도검사 제외 비용) * 54세 및 66세 여성은 국가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서 골밀도검사를 지원하고 있어(중복) 해당 비용 제외	• 51세 이상: 200천원(54세 및 66세 제외) • 54세 및 66세: 162천원
검진비 분담률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50% : 40% : 10%	
2024년도 예산 (국비 기준)	43억원 (검진비용 3,300백만원, 검진관리비 1,000백만원)	16억 8,700만원 (검진비용 1,163백만원, 검진관리비(행정비) 524백만원)

자료: 1.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시행지침」, 2024.
 2. 해양수산부,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시행지침」, 2024.
 3.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 2024.1.

1) 안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대상자) 남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농업경영체²⁾에 등록한 농어업인(경영주 및 경영주외 종사자)으로 한정함³⁾
 - － 남성농업인, 51~70세
 - － 남성어업인, 51세 이상
 - (검진수가) 남성농업인 22만원, 남성어업인 20만원
 - (검진주기) 2년(홀짝수년 출생자 대상)
-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특수건강검진 대상 남성 농어업인 수 산출

- 최근 6년(2019~2024.6월말)간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남성농업인, 임업인 및 어업인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임산물 생산·채취 등 임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 구분없이 ‘농업경영체’로 등록되며, 2019년부터 산림청에서 임업인을 농업인과 별도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기 시작함
 -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 간 중복 등록이 가능하며, 다음 표의 숫자는 각 경영체 간 중복 등록된 사람이 포함됨
 - － 예를 들어 농업인과 임업인, 농업인과 어업인, 임업인과 어업인 간 중복 등록이 가능함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 ④ (생략)

3) 다만, 현행 여성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경우, 대상자를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어업인’ 외에도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통계자료의 한계상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남성어업인으로 한정함

[표 3] 농업경영체(농업·임업) 및 어업경영체 등록 남성 농·임·어업인 현황: 2019~2024년
(2024년 6월 말 기준, 단위: 명)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농업인	소계	1,326,978	1,345,906	1,359,378	1,383,681	1,382,716	1,378,275
	51~70세	742,335	751,551	760,421	779,560	770,654	756,680
	• 경영주	1,220,385	1,239,688	1,250,155	1,272,144	1,270,041	1,263,598
	51~70세	692,545	701,272	707,440	723,269	713,612	699,953
	• 경영주 외 농업인	106,593	106,218	109,223	111,537	112,675	114,677
	51~70세	49,790	50,279	52,981	56,291	57,042	56,727
임업인	소계	2,380	5,303	8,161	38,568	40,206	41,022
	51~70세	1,654	3,566	5,492	24,152	24,609	24,566
	• 경영주	2,180	4,860	7,532	35,633	37,146	37,913
	51~70세	1,548	3,343	5,160	22,628	22,995	22,964
	• 경영주 외 농업인	200	443	629	2,935	3,060	3,109
	51~70세	106	223	332	1,524	1,614	1,602
어업인	소계	49,458	52,256	53,227	54,723	56,075	55,431
	51~70세	25,778	27,881	29,098	30,381	31,552	28,533
	51세 이상	42,323	43,904	43,982	44,673	45,078	44,121
	• 경영주	45,949	48,374	49,193	50,447	51,576	50,927
	51~70세	24,166	26,043	27,108	28,171	29,190	26,150
	51세 이상	39,851	41,158	41,075	41,522	41,761	40,796
	• 경영주 외 종사자	3,509	3,882	4,034	4,276	4,499	4,504
	51~70세	1,612	1,838	1,990	2,210	2,362	2,383
	51세 이상	2,472	2,746	2,907	3,151	3,317	3,325

주: 1.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 간 중복 등록이 가능하며, 표의 숫자는 각 경영체 간 중복 등록된 사람이 포함된 것임
2. 임업인의 경우 2019년 4월부터 산림청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시작하였으며, 2022년 10월 1일부터 임업인에 대한 임업 공익기능직불금 지급제도가 시작됨에 따라 임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가 크게 상승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른 남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최근 3년 (2022~2024.6월말)간 총인구 수 대비 농어업경영체 등록 남성농업인·임업인·어업인 수의 평균 비율을 바탕으로 추계기간 동안의 각 경영체 수를 산출

○ 이때, 특수건강검진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농업인-임업인 중복자 수, 농업인-어업인 중복자 수를 제거함⁴⁾

- (남성농업인 51~70세) 총 남성인구 대비 2.95%(임업인 포함)

* 이때, 농업인-임업인 중복자는 농업인 그룹으로 포함함

- (남성어업인 51세 이상) 총 남성인구 대비 0.17%

* 이때, 어업인-농업인 중복자는 어업인 그룹으로 포함함

4) 다만, 어업인과 임업인 간 중복자 수는 자료의 한계로 제거하지 못하였으나, 업종 특성을 고려할 때 임업과 어업에 중복하여 종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표 4] 총 남성인구 수 대비 남성농어업인 수(중복제거) 및 평균 비율: 2022~2024년
(2024년 6월말 기준, 단위: 명)

		2022	2023	2024	연평균
총 남성인구(A)		25,818,686	25,859,888	25,876,776	25,851,783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업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종사자)	남성농업인(B)	1,383,681	1,382,716	1,378,275	1,381,557
	51~70세(B2)	779,560	770,654	756,680	768,965
	남성임업인(C1) ¹⁾	38,568	40,206	41,022	39,932
	51~70세(C2)	24,152	24,609	24,566	24,442
	- 남성 농·임업인 중복등록자(D1) ²⁾	30,658	31,561	31,964	31,394
	51~70세(D2)	18,781	18,814	18,531	18,709
	남성 어업인(E1)	54,723	56,075	55,431	55,410
	51~70세(E2)	30,381	31,552	28,533	30,155
	51세 이상(E3)	44,673	45,078	44,121	44,624
	- 남성 농·어업인 중복등록자(F1) ³⁾	21,118 ^(P)	21,103	21,035 ^(P)	21,085 ^(P)
	51~70세(F2) ³⁾	11,142 ^(P)	11,134	11,098 ^(P)	11,125 ^(P)
	51세 이상(F3) ³⁾	19,765 ^(P)	19,751	19,688 ^(P)	19,734 ^(P)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남성농업인(51~70세, 임업인 포함) (중복제거) (G=B2+C2-D2-F2)	773,789	765,315	751,617	763,574
	총 남성인구 대비 남성농업 인(51~70세) 비율 (H=G/A, %)	3.00%	2.96%	2.90%	2.95%
	남성어업인(51세 이상) (중복제거) (I=E3)	44,673	45,078	44,121	44,624
	총 남성인구 대비 남성어업 인(51세 이상) 비율 (J=I/A, %)	0.17%	0.17%	0.17%	0.17%

주: 1) 임업인의 경우 '19년 4월부터 산림청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시작하였으며, 2022년 10월 1일부터 임업인에 대한 임업 공익기능직불금 지급제도가 시작됨에 따라 임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가 크게 상승함

2) 남성 농업인 및 임업인 중복등록자 수는 각 연도 실제 중복자 수입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임업경영 정보 조회 및 중복자 추출)

3) 남성 농업인 및 어업인 중복등록자 수는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 전수 자료를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과 비교하여 중복되는 인원 수를 산출한 것임(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협업). 이때, 2022년 및 2024년의 남성 농업인 및 어업인 중복등록자 수는 데이터가 부재하므로, 2023년 기준 남성 농업인 등록자 대비 농·어업인 중복등록자의 비율을 각 연도 농업인 수에 곱하여 추정(P)함

- 2023년 기준 전체 남성농업인 수 1,382,716명(100%) 대비 전체 남성 농·어업인 중복자 21,103명(1.53%), 51~70세 남성 농·어업인 중복자 11,134명(0.81%), 51세 이상 남성 농·어업인 중복자 19,751명(1.43%)

자료: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중위기준)」, 2023.12.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3>

2.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중위기준)」에서 발표된 총 남성인구 수에 남성농업인(51~70세, 임업인 포함) 비율 2.95%와 남성어업인(51세 이상) 비율 0.17%를 곱하여 추계기간 동안의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를 산출함
 - 이때, 추계기간(2025~2029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남성인구 수 대비 농업·어업·경영체 등록 남성농어업인 수의 비율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5] 특수건강검진 대상 남성 농어업인 수 추정: 2025~2029년

(단위: 명)

			2025	2026	2027	2028	2029
총 남성 인구(A, 명)			25,837,903	25,795,052	25,753,184	25,711,849	25,670,259
특수건강 검진대상	남성농업인 수 (임업인 포함) (51~70세)	비율 (B, %)	2.95%	2.95%	2.95%	2.95%	2.95%
		소계 (C=A×B)	763,164	761,899	760,662	759,441	758,213
	남성어업인 수 (51세 이상)	비율 (D, %)	0.17%	0.17%	0.17%	0.17%	0.17%
		소계 (E=A×D)	44,601	44,527	44,454	44,383	44,311
합계(F=C+E)			807,765	806,426	805,116	803,824	802,524

주: 최근 3년(2022~2024.6월말)간 총 남성인구 수 대비 농업·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남성 농업인·임업인·어업인 수(중복 제거)의 평균 비율을 추계기간 동안 변동 없이 적용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중위기준)」 및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검진율: 시나리오별 구분

□ 시나리오에 따라 남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검진율을 구분하여 추계

[표 6] 시나리오별 남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검진율

구분	검진율	비고
시나리오 1	50.0%	정부안(농림축산식품부) 준용 * 현행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예산 편성시 사용한 검진율
시나리오 2	61.9%	과거 3년(2017~2019년)간 남성농업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평균
시나리오 3	75.2%	최근 3년(2021~2023년)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평균

자료: 1.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2. 고태화 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한 농업인의 건강검진 수검률과 질병 유병률,” 「보건정보통계학회지」,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2023.11.

3.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률 연도별 추이,” 2023.12.31. 기준

○ (시나리오 1) 검진율 50%인 경우

- 정부안과 동일하게 적용

※ 농림축산식품부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예산 편성시 사용한 검진율 50%를 준용한 것임

○ (시나리오 2) 검진율 61.9%인 경우

- 과거 3년(2017~2019년) 남성농업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산술평균⁵⁾
- 남성농업인 일반검진수검률: (’17년) 62.3%, (’18년) 63.8%, (’19년) 59.6%⁶⁾

[표 7] 농업인 및 일반인구의 건강검진 수검률 비교: 2015~2020년

(Health examination participation rates from 2015 to 2020 in farmers and non-farmers)

(단위: %)

연도 (Year)	전체 (Total)		남성 (Men)		여성 (Women)	
	일반인구 (Non-farmer)	농업인 (Farmer)	일반인구 (Non-farmer)	농업인 (Farmer)	일반인구 (Non-farmer)	농업인 (Farmer)
2015	73.4	60.6	74.2	59.4	72.6	62.8
2016	75.4	61.6	76.0	60.8	74.8	63.0
2017	76.2	62.9	77.0	62.3	75.4	64.1
2018	75.2	64.2	76.1	63.8	74.4	64.9
2019	76.2	60.1	77.1	59.6	75.3	61.2
2020	69.5	52.1	70.6	51.8	68.4	52.7

주: 아래 인용 자료에서 “농업인과 일반인구에서 모두 2020년도 건강검진 수검률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인다.”와 같이 밝히고 있으므로, [시나리오 2]에서 2020년 남성농업인 검진율은 평균 산출시 제외함

자료: 고태화 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한 농업인의 건강검진 수검률과 질병 유병률,” 「보건정보통계학회지」, vol. 48 iss. 4,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2023.11., 353쪽

○ (시나리오 3) 검진율 75.2%인 경우

- 최근 3년(2021~2023년)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산술평균
- 일반검진 수검률: (’21년) 74.2%, (’22년) 75.4% (’23년) 76.1%⁷⁾

5) 고태화 외(2023.11)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하여 농업인 및 일반인구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비교함.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건강검진 수검 대상으로 선정된 대상자 중 일차건강검진을 시행한 대상자의 비율로써 계산함. 농업인 건강검진의 경우 2015년도부터 2020년도의 농업인 전수자료를 이용하여 연도별 수검률을 확인함

(자료: 고태화, 임지혜, 최동필, 김경란, 김경수, 이민지, 강대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한 농업인의 건강검진 수검률과 질병 유병률,” 「보건정보통계학회지」, vol. 48 iss. 4,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2023.11. 349~355쪽)

6) 앞의 인용 논문(고태화 외, 2023)에서 “농업인과 일반인구에서 모두 2020년도 건강검진 수검률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인다.”와 같이 밝히고 있으므로, [시나리오 2]에서 2020년 남성농업인 검진율은 평균 산출시 제외함

7)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률 연도별 추이,” 2024.3.31. 기준
<<https://www.nhis.or.kr/announce/wbhaec11407m01.do>> (조회: 2024.7.21.)

※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수검자 편의를 제공⁸⁾하도록 한 것을 시나리오에 반영한 것임

[표 8]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연도별 추이: 2019~2023년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일반검진 수검률	74.1	67.8	74.2	75.4	76.1

자료: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률 연도별 추이,” 2024.3.31. 기준

<<https://www.nhis.or.kr/announce/wbhaec11407m01.do>> (조회: 2024.7.21.)

다. 특수건강검진 단가

□ 특수건강검진 단가는 현행 ‘여성농업인 및 여성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단가 준용(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의견 참고)

- (남성농업인) 22만원/명
- (남성어업인) 20만원/명
 - － 이때, 검진비 단가에 최근 3년(2022~2024년)간 건강보험 수가인상률 평균값 2.02% 적용⁹⁾
 - － 건강보험 수가인상률: (’22년) 2.09%, (’23년) 1.98%, (’24년) 1.98%

[표 9] 1인당 특수건강검진비 단가 추정: 2024~2029년

(단위: 천원/명)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남성농업인	220	224	229	234	238	243
남성어업인	200	204	208	212	217	221

주: 특수건강검진비 단가에 최근 3년(2022~2024년)간 건강보험 수가인상률 평균값 2.02% 적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출자료 및 「2024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매뉴얼」 참고

8)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전국 대상으로 대폭 확대,” 2023.1.15.

9) 국민건강보험, “연도별 환산지수 결정 현황,” (작성기준일: 2024.6.30.)

<<https://www.nhis.or.kr/announce/wbhaec11413m01.do>>

2025년 환산지수의 경우 치과, 한의, 약국, 보건기관, 조산원 등 5개 유형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으나, 2개 유형(병원, 의원)에 대해서는 협상이 결렬됨.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최근 3년(2022~2024년)간 환산지수의 평균값으로 적용

(자료: 국민건강보험 보도자료,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평균 1.96% 인상, 5개 단체와 체결—병협, 의협 합의점 찾지 못하고 끝내 결렬,” 2024. 6. 1.)

라. 검진주기

- 특수건강검진은 2년마다(격년) 수검하는 것으로 가정
 - 2024년 기준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참고
 - 홑작수년도 출생자가 해당연도에 수검

마. 검진관리비(행정비용)

- 검진관리비(행정비용)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현행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관리기관¹⁰⁾ 및 검진관리비(행정비) 편성 사례를 참고하여 산출한 비용으로 적용
 - (남성농업인 검진관리비) 20억원 (’24년 기준)
 - (남성어업인 검진관리비) 1억 6,400만원 (’24년 기준)
 - 이때, 추계기간 동안 검진관리비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바. 분담률

- 특수건강검진비용의 국비, 지방비 및 자부담 비율은 2024년 기준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참고하여 적용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50% : 40% : 10%
 - 단, 검진관리비(행정비용)는 현행과 같이 국비 100%로 가정하고, 정부안을 준용하여 매년 20억원이 추계기간 동안 변동없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사. 추계결과

- 추계 결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남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하는 경우, 총사업비(국비, 지방비, 자부담)는 검진을 시나리오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계됨
 - (시나리오 1) 검진을 50.0%인 경우, 5년간 총 2,447억 9,600만원
 - (국 비) 1,269억 8,800만원
 - (지방비) 935억 9,100만원

10) 2024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관리기관은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관리기관은 2024년도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경상국립대학교와 컨소시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자부담) 233억 9,800만원
- (시나리오 2) 검진율 61.9%인 경우, 5년간 총 3,004억 8,300만원
 - (국 비) 1,548억 3,100만원
 - (지방비) 1,158억, 6,500만원
 - (자부담) 289억 6,600만원
- (시나리오 3) 검진율 75.2%인 경우, 5년간 총 3,628억 7,700만원
 - (국 비) 1,860억 2,800만원
 - (지방비) 1,408억 2,300만원
 - (자부담) 352억 600만원

[표 10] 남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총사업비 추계: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공통 변수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A, 명)	남성농업인 (A1, 51~70세, 임업인 포함)	763,164	761,899	760,662	759,441	758,213	—	—
		남성어업인 (A2, 51세 이상)	44,601	44,527	44,454	44,383	44,311	—	—
	검진 주기(2년마다) (B, 홀짝수년 출생자 구분)		50%	50%	50%	50%	50%	—	—
	검진비 단가 (C, 천원/명)	남성농업인(C1)	224	229	234	238	243	—	—
		남성어업인(C2)	204	208	212	217	221	—	—
	검진관리비 (D, 백만원, 국비 100%)	남성농업인(D1)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2,000
		남성어업인(D2)	164	164	164	164	164	820	164
		소계 (D=D1+D2)	2,164	2,164	2,164	2,164	2,164	10,820	2,164
시나리오 1 (검진율 50.0%일 때)	검진율(E, %)		50.0%	50.0%	50.0%	50.0%	50.0%		
	검진비 (F, 백만원)	남성농업인(51~70세) (F1=A1×B×C1×E)	42,820	43,612	44,419	45,242	46,080	222,173	44,435
		남성어업인(51세 이상) (F2=A2×B×C2×E)	2,275	2,317	2,360	2,404	2,448	11,804	2,361
		소계 (F=F1+F2)	45,096	45,929	46,779	47,646	48,528	233,976	46,795
		- 국비(F×50%)	22,548	22,964	23,389	23,823	24,264	116,988	23,398
		- 지방비(F×40%)	18,038	18,371	18,712	19,058	19,411	93,591	18,718
		- 자부담(F×10%)	4,510	4,593	4,678	4,765	4,853	23,398	4,680
	총사업비 (G=D+F, 백만원)		47,260	48,093	48,943	49,810	50,692	244,796	48,959
		- 국비(D+F1)	24,548	24,964	25,389	25,823	26,264	126,988	25,398
		- 지방비(F2)	18,038	18,371	18,712	19,058	19,411	93,591	18,718
		- 자부담(F3)	4,510	4,593	4,678	4,765	4,853	23,398	4,680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 2 (검진율 61.9%일 때)	검진율(H, %)		61.9%	61.9%	61.9%	61.9%	61.9%	—	—
	검진비 (I, 백만원)	남성농업인(51~70세) (I1=A1×B×CI×H)	53,012	53,991	54,991	56,010	57,047	275,050	55,010
		남성어업인(51세 이상) (I2=A2×B×C2×H)	2,816	2,869	2,922	2,976	3,031	14,613	2,923
		소계 (I=I1+I2)	55,828	56,860	57,912	58,985	60,077	289,663	57,933
		— 국비(I×50%)	27,914	28,430	28,956	29,493	30,039	144,831	28,966
		— 지방비(I×40%)	22,331	22,744	23,165	23,594	24,031	115,865	23,173
		— 자부담(I×10%)	5,583	5,686	5,791	5,899	6,008	28,966	5,793
	총사업비 (J=D+I, 백만원)		57,992	59,024	60,076	61,149	62,241	300,483	60,097
		— 국비(D+I×50%)	29,914	30,430	30,956	31,493	32,039	154,831	30,966
		— 지방비(I×40%)	22,331	22,744	23,165	23,594	24,031	115,865	23,173
		— 자부담(I×10%)	5,583	5,686	5,791	5,899	6,008	28,966	5,793
시나리오 3 (검진율 75.2%일 때)	검진율(K, %)		75.2%	75.2%	75.2%	75.2%	75.2%	—	—
	검진비 (L, 백만원)	남성농업인(51~70세) (L1=A1×B×C1×K)	64,431	65,621	66,836	68,074	69,335	334,296	66,859
		남성어업인(51세 이상) (L2=A2×B×C2×K)	3,423	3,486	3,551	3,617	3,684	17,761	3,552
		소계 (L=L1+L2)	67,854	69,107	70,387	71,691	73,018	352,057	70,411
		— 국비(L×50%)	33,927	34,554	35,193	35,845	36,509	176,028	35,206
		— 지방비(L×40%)	27,141	27,643	28,155	28,676	29,207	140,823	28,165
		— 자부담(L×10%)	6,785	6,911	7,039	7,169	7,302	35,206	7,041
	총사업비 (M=D+L, 백만원)		70,018	71,271	72,551	73,855	75,182	362,877	72,575
		— 국비(D+L×50%)	35,927	36,554	37,193	37,845	38,509	186,028	37,206
		— 지방비(L×40%)	27,141	27,643	28,155	28,676	29,207	140,823	28,165
		— 자부담(L×10%)	6,785	6,911	7,039	7,169	7,302	35,206	7,041

주: 1. (시나리오 1) 검진율 50.0%인 경우 (정부안 준용. 현행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예산 참고)
(시나리오 2) 검진율 61.9%인 경우 (과거 3년('17~'19년)간 남성농업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평균)
(시나리오 3) 검진율 75.2%인 경우 (최근 3년('21~'23년)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평균)

2. 검진비 단가에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수가인상률 평균값 2.02% 적용

3. 국비, 지방비, 자부담 분담률은 50% : 40% : 10%로 가정 (현행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참고)
단, 국비에 검진관리비(행정비용) 포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통계청 및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검진율, 검진단가 등의 추계에 필요한 요인을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향후 해당 요인의 변동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